▶1 주택자가 주택매입으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

처분조건부 특약

본인확인

본 특약은 채무자와 홍콩상하이은행(이하 '은행") 사이에 체결된 20 . . . 부동산대출거래약정에 추가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다.

1. 목적

본 특약은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관련 금융감독원 지도(은총가-00055)에 따라, 1 주택 소유자가 주택매입으로 2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다.

2. 처분

① 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른 신규대출(이하 "신규대출")취급 후 2 년 이내에 아래 처분대상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기로 한다. 단,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이 있는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아래 처분대상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하기로 한다.

② 채무자는 위 ①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후, 관련 증빙자료를 은행에 즉시 제출하기로 한다.

3. 기한이익상실

채무자가 위 2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행 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없이 곧 신규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.

4. 기타

채무자와 아래 처분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다른 경우 주택소유 세대원이 향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본 특약은 계속 유효하며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, 위 부동산대출거래약정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처분대상주택 주소지 : _____

20 년 월 일

HSBC 은행

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슴 (잘 듣고 이해하였슴)

채 무 자 (본인) : _____ (인)

(주민등록번호 : -)

처분대상 기존주택 소유자 : _____ (인)

(주민등록번호 : -)

담 보 제 공 자 : _____ (인)

(주민등록번호 : -)

_____ : _____ (인)

(주민등록번호 : -)